

<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고 제2024 - 002호>

2024년도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세부과제 수행기관 모집 공고

‘2024년도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’의
세부과제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
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2월 23일
한국한의약진흥원장

목 차

I. 공고 개요	1
II. 신청서류 접수	7
III. 선정방식 및 기준	9

※ 별첨 :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(제출서류 양식 포함) 각 1부

I

공고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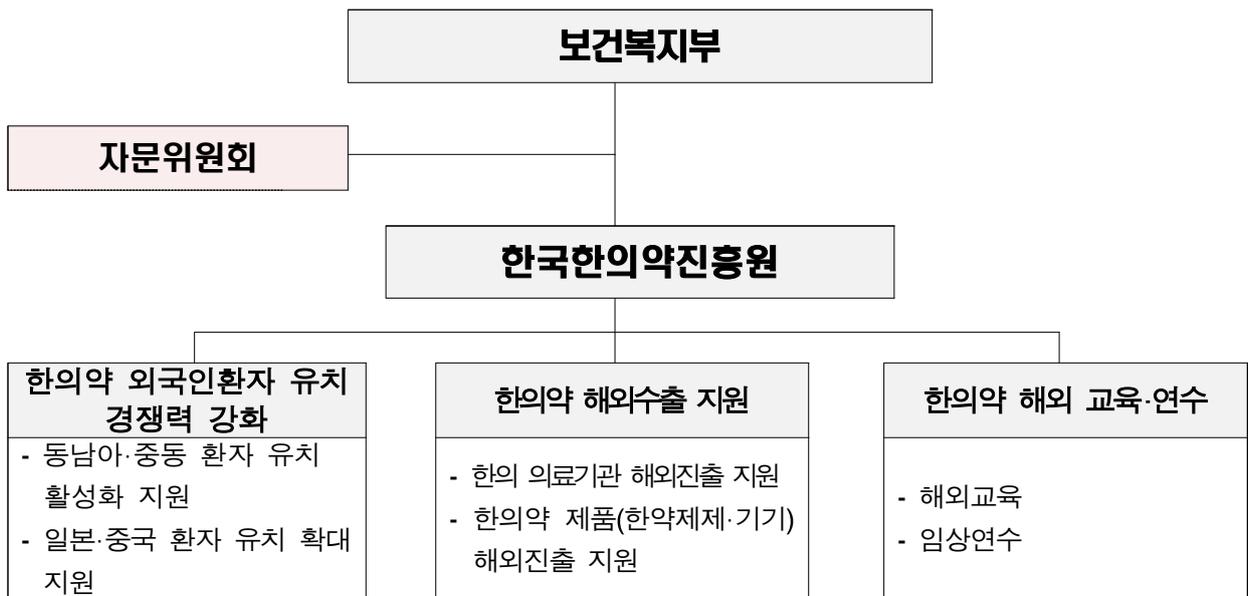
1 공고 개요

□ 사업목적 및 근거

-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

* 「의료해외진출법」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·제11조 및 제4차 한의약육성 발전종합계획('21년~'25년) 연계한 지원사업 수행

□ 추진체계



2 주요내용

□ 일반사항

- (공고명) 2024년도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세부과제 수행기관 모집
- (세부과제) 총 6개

① 세부내용

세부과제명	과업내용	이행사항	사업 기간
① 동남아·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남아·중동 환자 유치 경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·환자 유치 프로그램 홍보 지원(해외 홍보, 인프라 구축, 유치채널 확보 등) ※ (지원대상)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+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 컨소시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유치 가이드북 제작 및 제출 (공개용) ②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전년 대비 20% 이상 증가 ③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 한의약 홍보회, 박람회 등 대상 국가 홍보 행사 운영 시 최소 1회 필수 참석 	계약체결일로부터~ 2024. 12. 18 * 성과평가 등을 통해 1년 연장 가능
② 일본·중국 환자 유치 확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·중국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유료 진료로 직결 될 수 있는 환자유치 성공 모델 개발 및 의료기관 One-Stop 서비스 운영 ※ (지원대상)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환자 유치 프로그램 개발,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전년 대비 20% 이상 증가 ② 참여 희망 의료기관 모집 설명회 개최 및 의료기관 선정(진흥원 협의) ③ 의료기관 유치 프로그램 홍보 및 환자 진료를 위한 사전·사후 관리 ④ 의료기관-통역인력 매칭 활성화 지원 	
③ 한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동, 동남아, CIS 등 국가로의 진출 한의 의료기관 발굴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출 단계별 맞춤 지원 ※ (지원대상)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1단계: MOU/MOA, 투자계약, 개원 법인설립 관련 본 계약 중 1건 체결 ② 2단계: 법인등록증 투자허가증 지식재산권 중 1건 이상 획득 ③ 3단계: 운영허가증 발급 1건, 연간 진료 실적 제출 	
④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, 중동, 동남아, CIS 등 국가로의 진출 희망 한의약 제품(제제, 의료기기) 기업 대상 진출 단계별 맞춤 지원 ※ (지원대상) 한의약 제품(한약 제제, 의료기기) 기업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1단계: 해외시장 기초보고서 제작 1건 ② 2단계: 해외규격인증서, 해외 지식재산권 중 1건 이상 획득 ③ 3단계: 품목 수출 관련 투자 계약 1건 이상 체결 	

세부과제명	과업내용	이행사항	사업 기간
⑤ 해외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 대상국의 의과대학 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 실시 및 의과대학 내 교육과정 개설 지원 ※ (지원대상) 한의과대학, 한의학 전문대학원 등 한의학 전문 교육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 (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) ② 학생 교육, 전문가 양성,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, 국내·외 교환학생, 교환 교수, 공동연구, 인력 및 학술교류 등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해외 의과대학 내 교육과정 개설 	계약체결일로부터~ 2024. 12. 18 * 성과평가 등을 통해 1년 연장 가능
⑥ 임상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중점 협력국의 외국 의사(임상경력 3년 이상) 대상 임상연수 운영을 통해 한의 의료기술 전수 ※ (지원대상)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또는 의료해외 진출 신고 등록한 한방 의료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의약임상연수 프로그램 개발 (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) ② 의료기관·제약·의료기기기업 등과 협력으로 현지 의료 환경과 질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및 제품 사용 연수 실시·임상 이론 기술 전수 	

* 세부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2 [제안요청서] 확인 必

** 위 세부과제별 중복 신청 가능. 단, 최종 선정 시 평가를 거쳐 1개 기관당 최대 2개 세부과제로 제한. (예시 A기관 ①, ②, ⑤ 신청 → 평가 → ①, ⑤ 과제 선정)

② **사업계획서 작성** : 각 사업별 수행과업에 대해 세부계획 및 일정 등 평가 기준 내용 참고하여 양식에 맞춰 작성

③ **사업신청** : 신청인(대표 또는 기관장)이 사업신청서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제출

☞ 7p “신청서류 접수” 참조

④ **사업선정 및 보조금교부** :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

○ (선정규모)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름

○ (보조금액) 6개 세부사업 총 673백만원 이내

세부과제명	지원예산	자부담금
① 동남아·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	○ 총 180백만원(60백만원/3개) - 운영비, 홍보비, 여비, 마케팅 또는 통역 인력 인건비(신규채용에 한함) 등	민간매칭 (최소 20%이상)
② 일본·중국 환자 유치 확대 지원	○ 총 80백만원(40백만원/2개) - 운영비, 홍보비, 여비, 마케팅 또는 통역 인력 인건비(신규채용에 한함) 등	
③ 한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	○ 총 90백만원(10~50백만원/2개) - 운영비, 홍보비, 여비, 마케팅 또는 인건비(신규채용에 한함) 등	
④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 지원	○ 총 83백만원(10~40백만원/2개) - 운영비, 홍보비, 여비, 마케팅 등	
⑤ 해외교육	○ 총 120백만원(60백만원/2개) - 운영비, 홍보비, 여비, 개발비 또는 인건비(신규채용에 한함)	국고 100%
⑥ 임상연수	○ 총 120백만원(60백만원/2개) - 운영비, 홍보비, 여비, 개발비 또는 인건비(신규채용에 한함)	

* 보조금은 세부사업별 규모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수행기관에 차등 지원 예정,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기관 수 변동 가능하며, 이에 따른 지원 예산도 총액 내에서 변동 가능

- (지출범위)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출
 -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*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지출해야 함
 - * 제안요청서의 예산지원 기준 참고(자산성 및 간접비성 사업비용 불인정)
 -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 -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(사업 예산(각종수수료및사용료) 내 포함 필요, 민간+국고 총액의 0.825%)
- (보조금 집행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~ '24. 12. 18.(수)까지
- (사업성과서 제출) '24. 12. 31.(화)까지

○ (성과평가)

- (평가시점) 사업성과서 제출 이후 ⇒ 별도 통보
- (평가지표) 사업계획서의 사업성과목표* 이행·달성 여부를 평가
 - * 평가지표 예시 : 사업실적의 충실성, 목표 달성률, 예산 사용현황 등
- (평가방법) 내외부 전문가(5인 이내)로 구성된 ‘평가위원회’ 를 통한 평가
- (평가결과) 차년도 사업 승인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활용

○ (추진일정)

업무단계	추진일정	주요내용
↓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	2.23.~3.14.	- 사업 공고문 안내 -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
↓ 사전 설명회	3. 5.	- 공모 내용, 지원방법 등 사전 설명 * 참석 방법 등은 별도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
↓ 제출서류 확인	3.14~3.15	-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검토
↓ 선정 평가(예정)	3.21	-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* 일정 변경 시 신청기관 별도 안내
↓ 선정기관 협의	3.22.~3.25	-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및 보완
↓ 수행기관 선정 통보	3. 26.	- 선정된 수행기관 별도 통보
↓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	3.28.	- 협의 사항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↓ 협약 체결 및 보조금 1차 교부	4.1.	- 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- 보조금(1차) 교부신청처 접수 후 보조금 지원
↓ 사업 착수 보고	4.8.	- 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일정 등 보고
↓ 중간 보고 및 보조금 2차 교부	8월 중	- 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- 보조금(2차) 교부신청처 접수 후 보조금 지원
↓ 최종보고회 및 평가	12월 중	-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
↓ 보조금 정산	12월 말	- 보조금 잔액/불인정금액 환수

* 위 추진일정은 평가, 기관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기타사항

- 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동안 진흥원(복지부 의뢰 조사기관 포함)이 **확인·조사**를 위한 **자료제출,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협조**해야 함
- 협약체결 즉시 사업 착수가 진행되며 사업추진 일정은 한국한의학진흥원과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
 - 사업 착수보고,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(성과평가)에 반드시 참석하고, 발표가 요구될 경우 필히 진행

협약	사업비 교부 방식	사업비 정산
진흥원↔선정기관	1차, 2차로 나누어 교부 (수행기관 교부신청→진흥원 교부)	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진행

***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방식 등은 세부과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다른 방식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 예정**

- 수행기관은 사업 진행에서 컨설팅 받은 모든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함
- 수행기관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**관련 법규를 준수**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사업 선정 후 수행 기간 또는 종료 후라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발생 될 수 있음
- 수행기관은 진흥원과 **협약체결 후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**(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검토 후 제출 요망)

※ 선정된 사업자는 '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'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

- 관련 규정,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관리지침, 작성 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한의학진흥원 판단에 따름

II

신청서류 접수

□ 기간 및 방법

- (공고기간) '24. 2. 23.(금) ~ '24. 3. 14.(목) 16:00
- (공고방법)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(www.nikom.or.kr)

□ 제출서류(신청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 참조)

- 사업공모 서류 제출공문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
- 서약서
- 공동수급협정서(컨소시엄 구성 시)
- 대표자 선임계(컨소시엄 구성 시)
-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 - *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- ** 제출서류가 부정·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, 선정을 취소·해지하며, 해당 건의 사업비를 미지급·환수하며 이때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출기관이 부담함
- 신용평가등급 확인서
- 기타(신청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확인)

□ 제출방법

- 이메일 접수(global@nikom.or.kr)
 - 파일명 : 세부사업명_신청기관명(hwp, PDF)
예) 동남아 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지원_○○○○○한방병원
 - * hwp, PDF 두개 파일 형식 모두 제출
 - ※ 접수 마감 시간 엄수, 제출완료 후 반드시 유선 확인

○ (문의처)

① 접수 관련 문의			
구분	직위	성명	연락처
제출서류 및 접수 확인	연구원	이임주	02-3393-4555
② 사업내용 관련 문의			
구분	직위	성명	연락처
① 동남아·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② 일본·중국 환자 유치 확대 지원	주임연구원	신윤희	02-3393-4553
③ 한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④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 지원	주임연구원	박서희	02-3393-4554
⑤ 해외교육 ⑥ 임상연수	책임연구원	성수현	02-3393-4531

Ⅲ

선정방식

□ 선정방식

-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「평가위원회」를 구성(5인 이내)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
 - (평가방법) 서류 → 대면평가(심사위원회)
 - * 평가기준 신청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 참조
 - 각 배점당 위원별 최고·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, 총점이 기준 미달(70점 미만)인 지원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응모 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하되,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응모 시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□ 기타사항

- (사전조사) 필요시 사업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참가하는 현장 사전조사가 실시될 수 있음
- (조건부 사업승인) 사전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이뤄질 수 있음